

의안번호	2208399
의 퇴 인	황정아의원
회 답 일	2025. 6. 23.
추계번호	25B109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한 설립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별도 법인 설립에 따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이사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2,200만원(연평균 약 2,4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이사회 운영	23	23	23	23	23	117	23
설립위원회 운영	5	—	—	—	—	5	1
합 계	28	23	23	23	23	122	24

- 주: 1. 한국연구재단 등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이사회 및 설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 편성예산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기간 동안 이사회·설립위원회의 회의 참석 인원 및 개최 횟수, 참석수당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2조의2(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함(제1항)	의무규정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에서 별도의 법인으로 전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제4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부칙 제2조(기획평가원의 설립준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평가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제1항) 설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되,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됨(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32조의2(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신설	○	- 한국연구재단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개별법인 전환에 따른 이사회 및 설립위원회 구성·운영 비용
2	안 부칙 제2조(기획평가원의 설립준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이사회 및 설립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개정안 부칙¹⁾은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재산을 한국연구재단의 이사회 의결에 따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고, 개정안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직원은 설립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직원이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규인력 채용 및 청사 신축·임차 등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대전광역시 소재의 자체 청사를 보유하고 있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개별 법인 전환에 따라 이사회 구성이 필요하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이사회를 구성·출석하는 이사 및 감사의 수는 한국연구재단 등의 사례²⁾³⁾를 참고하여 이사 15인(기관장 1인 포함), 감사 1인으로 가정함

- 개정안 부칙에 따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설립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며, 2026년 1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 1) 안 부칙 제3조(기획평가원 설립에 따른 권리·의무 등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연구재단법」 제3조의2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한국연구재단의 이사회에서 기획평가원에 양도 또는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의무는 기획평가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기획평가원이 이를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획평가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명의를 기획평가원의 명의로 본다.
- ④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한 행위 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기획평가원이 한 행위 또는 기획평가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직원은 설립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평가원의 직원이 된다.
- 2)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가정함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성) ①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서 생략)
- 제19조(회의)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개요

- 현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한국연구재단법」⁴⁾에 따른 한국연구재단의 부설 기관이며, 현행법 제32조⁵⁾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기관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받고 있음

[표 2]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개요(2025년 기준)

구 분	내 용
설립 근거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2조)
기관 성격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4) 「한국연구재단법」 제3조의2(부설기관)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 정관」 제18조의3(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① 재단은 제3조에 따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을 둔다.
② 기획평가원은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되, 중요한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의 방침을 따른다.
③ 부설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한 자에 대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부설기관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부설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사업 추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협약·계약의 체결 및 업무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며, 권한 위임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⑥ 기타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5)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제1호에 따라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3.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등이 보유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알선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기법의 개발·보급
 5.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연구 등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 후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활용
 9. 지식재산권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의 관리·홍보·활용
 10.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수준조사 등 정책연구 사업
 1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시범사업
 1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주요 연혁	• '14. 6. 설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5개 기관으로 분산된 ICT R&D 기능 통합 • '19. 1.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으로 통합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른 통합(1부처 1기관으로 통합)
설립 목적	• ICT R&D 지원을 통한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진흥
주요 기능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전략수립 및 기술기획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정책연구, 정보 조사·분석 및 서비스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평가 및 관리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성과확산 및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 정보통신·방송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반조성, 표준화 지원 등
국가 출연금 (2025년 기준)	• 사업(출연) : 1,562,460백만원 • 기관운영(출연) : 21,836백만원
인원	• 정원(정규직) : 250명 • 현원 : 347명 (정규 246, 전문직 49, 공무 52)
조직	• 2본부 8단 1실 40팀 2사업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이사회 및 설립위원회 구성·운영 비용

□ 이사회 구성·운영 비용

- (이사회 구성·출석 인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개별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이사회의 구성이 필요하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이사회를 구성·출석하는 이사 및 감사의 수는 한국연구재단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사 15인(기관장 1인 포함), 감사 1인으로 가정함
 -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이사회 구성(안)
 - 이사(15인) : 이사장(상임) 1인(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당연직 이사(비상임) 2인(기획재정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선임직 이사(비상임) 12인
 - 감사(1인) : 선임직 감사(비상임) 1인

- (회의일수) 한국연구재단의 사례를 참고하여 연 6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이사회 참석수당) 한국연구재단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사회 참석수당은 1인당 30만원을 적용함
- 이사회 구성·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임 이사(공무원인 이사 제외) 및 감사 13인⁶⁾에 대한 이사회 참석수당으로 추계함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1,700만원(연평균 약 2,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이사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명, 회,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참석 인원 수(A)	13	13	13	13	13	—	—
회의 개최 수(B)	6	6	6	6	6		
회의 참석수당(C)	0.3	0.3	0.3	0.3	0.3	—	—
이사회 운영 (D=A×B×C)	23	23	23	23	23	117	23

주: 1. 한국연구재단 등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 편성예산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기간 동안 회의 참석 인원 및 개최 횟수, 참석수당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설립위원회 구성·운영 비용

- (위원회 구성 및 회의일수) 개정안 부칙에 따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설립 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2026년 1년간 운영하며, 연 5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단가) 위원 참석수당(안전검토비 등 포함)은 위원 1인당 20만원을 적용함⁷⁾

6) 상임이사인 이사장(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은 별도로 지급받는 보수 외에 이사회 참석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이사 2인에게도 별도의 참석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00만원(연평균 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설립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참석 인원 수(A)	5	—	—	—	—	—	—
회의 개최 수(B)	5						
회의 참석수당(C)	0.2	—	—	—	—	—	—
설립위원회 운영 (D=A×B×C)	5	—	—	—	—	5	1

주: 1. 실제 설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 편성예산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기간 동안 회의 참석 인원 및 개최 횟수, 참석수당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함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IV. 부대의견

- 한국연구재단 등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이사회 및 설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 편성예산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